



# 학 칙

규정번호	II-01-C01-01
개정일자	2020.12.14.
제정일자	2003.03.01.
담당부서	학사운영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학칙은 동남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에 입각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7.02.28.>
- 제 3 조(명칭)** 본 대학은 동남보건대학교라 한다.
- 제 4 조(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에 둔다.
- 제 5 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별 입학정원 표 삽입) <개정 2016.02.01., 2016.11.09., 2017.09.21., 2018.06.28., 2019.08.01., 2020.12.14.>

계열	구분		입학정원	
	학과명	주간	계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과	64	64	
	아동보육복지과	60	60	
	세무회계학과	60	60	
	글로벌 관광서비스과	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46	46
			42	42
	항공서비스과		42	42
보건계열	방사선과	105	105	
	임상병리과	80	80	
	식품제약과	55	55	
	물리치료과	80	80	
	바이오환경보건과	55	55	
	치기공과	80	80	
	치위생과	80	80	
	안경광학과	72	72	
	응급구조과	64	64	
	뷰티케어과	63	63	
	작업치료과	72	72	
	보건3D프린팅융합과	40	40	
	간호계열	간호학과	120	120
가정계열	식품영양학과	56	56	
입학정원 합계		1,336	1,336	

- 제 5 조의2(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①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학과(이하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1.09., 개정 2019.12.18.>
- ②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2.18.>

## 제 2 장 직 제

- 제 6 조(교직원)** ①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 ②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과 조교를 둔다.
-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09., 2019.07.00>
1. 겸임교원: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삭제>
  4. 명예교수: 본 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직을 부여받은 자 <신설 2019.08.01>

- 제 7 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 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1.09., 2019.12.18.>
- ③직원은 대학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제 8 조(조직)** ①본 대학에는 기획조정처,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산학협력처를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2.01., 2016.04.18., 2018.03.19.>
1. 기획조정처에는 전략기획팀, 전략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02.01.>
  2. 교무처에는 학사운영팀, 입학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04.18.>
  3. 학생처에는 학생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6.04.18., 2018.03.19.>
  4. 사무처에는 총무팀, 회계재무팀을 둔다. <개정 2016.04.18., 2020.12.14.>
  5. 산학협력처에는 산학취업지원팀을 둔다. <신설 2018.03.19.>
- ②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04.18.>
- ③본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책임자로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며, 그에 따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장 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 장 수 업 연 한

**제 9 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②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제약과, 물리치료과, 바이오환경보건과, 유아교육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아동보육복지과, 세무회계학과, 글로벌관광서비스과(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항공서비스과, 응급구조과, 뷰티케어과, 작업치료과, 보건3D프린팅융합과는 3년으로 하며, 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09., 2017.09.21., 2018.06.28., 2019.08.01.>

**제 1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조(학기)** ①학기는 2학기 이상으로 하되, 매 학년도 학사일정으로 정하며, 3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1., 2020.12.14.>

1. <삭 제 2020.12.14.>

2. <삭 제 2020.12.14.>

②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9.21.>

③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수업 및 현장실습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9., 2017.09.21.>

**제 13조(수업일수)** ①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9.21.>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9.>

③제1항에 따른 교과목별 수업일수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1.>

**제 14조(휴업일)** 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개정 2016.11.09.>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4. 근로자의 날 <신설 2019.01.24.>

②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09.>

## 제 5 장 신 입 학

**제 16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09.>

**제 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8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9조(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9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23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 2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집시기 지원가능)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위탁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6 장 편입학 · 재입학

**제25조(편입학)** ①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편입학은 각 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8.06.28.>

③편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재입학)** ①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매학 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 제1항(징계)의 규정에 해당되었던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계약학과교육생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재입학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재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7 장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7조(전과)** ①전과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부터 허가할 수 있다. 단, 수업연한이 상이한 교과로의 전과, 정원의 전형 입학생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계약학과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6.11.09., 2019.12.18.>

②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의료인 및 의료기사 관련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09.>

③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전과 대상학과간의 관련성, 교과목 이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학 기간동안에 1회에 한하여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6.11.09.>

⑤전과한 자의 취득 학점은 전입한 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야간 학과로 입학한 자는 주간 학과에 전과할 수 없다.

⑦전과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휴학)** ①군입대, 질병, 가정형편, 창업, 육아,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입대 및 질병휴학,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학 이외에는 입학, 편입 및 전과 당시 학기의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09., 2020.12.14.>

②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창업,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09.>

③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6.11.09.>

1. 군입대휴학 : 군입대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

사 포함)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병·의원 전문의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9.>

④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창업휴학의 심의를 위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종료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9.>

②복학은 학기개시 후 3주(21일)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09.>

**제30조(자퇴)** ①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1조(제적)** 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09.>

1. 휴학기간 종료 후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타교에 입학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단, 분할납부 신청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개정 2018.06.28.>

4. 사망 및 실종된 자

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제 8 장 교 과 및 수 업

**제3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그 비율은 교양교과 5%~30%, 전공교과 70%~95%로 한다. 다만, 전공교과의 30% 이상은 실험실습을 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4.>

②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과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산업현장 직무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미래산업 변화에 따라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⑥국내대학 및 외국대학 간 협약을 통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공

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9.21.>

**제32조의2(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 <신설 2016.11.09.> ① 총장은 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직무분야에 따라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4.14., 2019.08.01.>

②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4.14., 2019.08.01.>

**제33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실험, 실습, 실기를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한다. 단, 현장실습의 학점이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9., 2017.09.21.>

②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1.24.>

**제34조(학점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3.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 및 수강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이내 학점으로 인정한다.
4. 본 대학에서 총장의 승인 하에 실시하는 4일 이상의 국외연수, 국외 어학연수 등은 학점(국제교류)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5.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창업동아리 등의 창업 준비활동은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하며, 한학기 3학점(총 6학점)이내에서 교양교과(창업실습)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7. 재입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신설 2016.11.09.>
8. 본교 입학 전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본교와의 협약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8.01.>
9. 졸업예정 학기 조기취업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09.> <개정 2019.08.01.>

② <삭제>

③ 제1항 1호 내지 6호의 학점인정 심의를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9.>

④~⑦ <삭제>

- 제34조의2(실습학기제)** ①국·내외의 학교·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기 단위의 교육, 체험학습, 연구, 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특정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 참가 학생은 20학점 내외에서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④실습학기제의 운영 및 이수 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5조(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09.>
- ②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③수업시간표는 강의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 ④강좌는 08: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6조(집중수업)** 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7조(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2.01., 2019.01.24., 2019.08.01., 2019.12.18.>
- 제38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②이수한 교과목의 평점 등급이 D+(69점)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수강신청 절차에 준한다. 단, 교직과목은 C+(79점)이하로 한다. <신설 2016.04.18.>
- 제39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40조(출석인정)** ①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을 제외하고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09.>
- ②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41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 ②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한다.

④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목별 성취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02.28.>

**제42조(추가시험 및 재시험)** ①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2.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한다. 다만, 상고로 인한 추가시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시험은 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여, 당해과목 성적이 D<sub>0</sub>급 이하인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출석결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응시할 수 없다.

2.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시험은 C+급까지 인정한다.

③추가시험 및 재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등급표 삽입)

(9단계 평점 방법)

등 급	배 점	평 점	등 급	배 점	평 점
A <sup>+</sup>	95~100	4.5	D <sup>+</sup>	65~69	1.5
A <sup>0</sup>	90~94	4.0	D <sup>0</sup>	60~64	1.0
B <sup>+</sup>	85~89	3.5	F	59이하	0
B <sup>0</sup>	80~84	3.0	P	인정	불계
C <sup>+</sup>	75~79	2.5	N	불인정	불계
C <sup>0</sup>	70~74	2.0	<삭 제>		

②교과목 성적이 D<sup>0</sup>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성적과 체험학습, 현장실습 및 인턴십 과정 이수로 인한 학점인정은 인정(P)과 불인정(N)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학적부의 성적기록은 등급으로 하고, 평점평균은 각 과목의 등급에 각 과목의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평점계)를 총 수강신청 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4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만 기재한다.

⑥<삭 제>

⑦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⑧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sup>+</sup>(89점)급까지 인정한다.

⑨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중간 및 기말시험 등을 대신한 과정평가 및 총괄평가 등 직무능력평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09.>

⑩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핵심역량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⑪성적평가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성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4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과목을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행위 또는 과오로 인한 성적

**제44조의2(학점 포기)** <삭 제> <개정 2019.08.01.>

**제45조(학사경고)** ①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 <개정 2016.02.01.>

②학사경고의 통보절차 및 경고자 특별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졸업)** ①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1.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인 3년제 110학점, 4년제 130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9.01.24.>
2. 필수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3. 교양교과로 3년제 8학점, 4년제 25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6.02.01., 2019.01.24.>
4. 전공교과(교직포함)로 3년제 80학점, 4년제 96학점 이상 취득한 자 <신설 2019.01.24.><개정 2019.08.01.>

② <삭제 2016.11.09.>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06.28.>

④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6.28.>

**제47조(후기졸업)**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 미달자.
2.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자
3. 교양교과 3년제 8학점(4년제 25학점)을 취득하지 못한자 <개정 2016.02.01., 2019.01.24.>
4. <삭제 2016.11.09.>
5. 전공교과(교직포함)로 3년제 80학점, 4년제 96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신설 2019.01.24.> <개정 2019.08.01.>

**제48조(학위수여)** 대학의 장은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사학위는 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8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①대학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8조의3(학위수여의 유예)** ①학칙 제46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 수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02.28.>

②학위수여 유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2.28.>

**제49조(수료)** 제46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1.24.>

구분	3년제	4년제
1학년	32 학점이상	30학점이상
2학년	72 학점이상	60학점이상
3학년	110 학점이상	95학점이상
4학년	-	130학점이상

## 제 10 장 평생교육

**제50조(교육과정의 연계교육)**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2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산업체 경력없는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은 제②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시간제 등록)** ①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범위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2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5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4호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4.18.>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 2(학점은행제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신설 2016.04.18.>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제54조의 3(학점은행제 출석 및 수업 관리)** <신설 2016.04.18.>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총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 및 수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 4(학점은행제 성적평가)** <신설 2016.04.18.> ①총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총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 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 5(학점은행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신설 2016.04.18.> ①총장은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

**제54조의 6(학점은행제 학적 관리 등)** <신설 2016.04.18.> ①총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학점은행제 운영부서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 11 장 학생활동

**제56조(학생자치기구)** ①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동남보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에게 신고하되 건물의 사용 및 외부인사의 학내초청일 경우에는 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학생 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학생지도)** ①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간행물 발행)**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2 장 규율 및 상벌

**제6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리와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2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3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인권침해 행위자 <신설 2016.11.09.>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개정 2016.11.09.>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회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4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3 장 납 입 금

**제65조(납입금)** ①학생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

이 징수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결석 또는 정학시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7조(납입금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8조(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 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단, 제적된 자가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제적 후 3년이 경과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전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 제 14 장 장 학 금

**제69조(장학금)** ①총장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 15 장 대 학 평 의 원 회

**제70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를 둔다.

**제71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회 평의원은 대학 교원·직원·조교·학생·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14.>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조교 1명 <신설 2020.12.14.>
4. 학생 1명
5. 동문 1명 <개정 2020.12.14.>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

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20.04.17>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3조 (평의원회의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6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4조(교수회의 구성)** ①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강의 전담 교원은 교수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처장, 보직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9.21.>

**제75조(교수회의 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04.17>
2. <삭제 2020.04.17>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삭제 2020.04.17>

**제76조(교무위원회)** ①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7조(제 위원회)** ①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7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78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9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8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1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4.17>
- 제82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제81조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9.01.24.>

## 제 18 장 부속 및 부설기관

- 제83조(부속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학술원 <개정 2020.12.14.>
    - 가. 학술정보관 <신설 2020.12.14.>
    - 나. 학술연구소 <신설 2020.12.14.>
  2. 박물관
  3. 예비군대대 <개정 2018.03.19.>
  4. <삭제 2020.04.17>
  5. 산학협력단 <개정 2018.03.19.>
  6. <삭제 2018.03.19.>
  7. <삭제 2018.03.19.>
  8. <삭제 2018.03.19.>
  9. <삭제 2018.03.19.>
- ②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3조의2(각종 지원센터)** ①본 대학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센터를 둔다.  
 ②각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 제84조(부설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둔다.
1. <삭제 2020.12.14.>
    - 가. <삭제 2019.12.18.>
    - 나. <삭제 2019.12.18.>
    - 다. <삭제 2019.12.18.>
  2. 평생교육원 <개정 2018.03.19.>
    - 가. <삭제 2018.03.19.>
    - 나. <삭제 2018.03.19.>
  3. 유치원 <개정 2018.03.19.>
- ②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9 장 자체평가

**제85조(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0 장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제86조(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①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1 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제87조(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에 의거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2 장 학교기업 <신설 2016.11.09.>

**제88조(학교기업의 설치)** ①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거,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학교기업은 교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74번길 50(정자동)에 설치한다. 단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거나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권역권 내)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89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총장은 학교기업을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②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은 본 학칙 제 8 장 교과 및 수업에 따른다.

**제90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학사내규)**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학사내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3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웹컨텐츠개발과, 피부미용과)
- 제 4 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동남보건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남보건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제 5 조(학과 주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야간학과가 주간학과로 개편된 경우 재적생 중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주간학과의 정원으로 본다.(인터넷경영정보과, 피부미용과)
- 제 6 조(수업연한 연장 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7 조(전문대학 수업연한 승인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입학정원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3년 연장학과 승인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학과	구분	입학정원년도			비고
		2002	2003	2004	
유아교육과	주	76	72	64	
응급구조과	주	36	32	32	
	야	40	40	32	
식품영양과	주	76	72	64	
보육과	주	76	72	64	

##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식품가공과·환경위생과·환경관리과·관광영어통역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식품생명과학과·환경보건과·환경생명과학과·관광영어과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계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식품생명과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05학년도 졸업생에게는 공업전문학사를 수여하고, 2006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보건전문학사를 수여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웹컨텐츠개발과·인터넷경영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웹컨텐츠과·e-비즈니스과 소속으로 한다.

**제 3 조(계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인터넷경영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06학년도 졸업생에게는 공업전문학사를 수여하고, 2007학년도 졸업생부터는 사회실무계열 및 e-비즈니스과 소속으로 하며 경영전문학사를 수여한다.

**제 4 조(학과 주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야간학과가 주간학과로 개편된 경우 재적생 중 2년제는 2006학년도 말까지, 3년제는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주간학과의 정원으로 본다.(2년제 : 안경광학과, 관광영어과, 관광일어통역과, 관광중국어통역과, e-비즈니스과 / 3년제 :응급구조과)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관광일어통역과·관광중국어통역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일어과·관광중국어과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관광영어과·환경생명과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관광영어과·바이오환경과 소속으로 한다.

**제 3 조(학제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웹컨텐츠과·e-비즈니스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세무회계학과·경영학과 소속으로 한다.

제 3 조(학제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재시험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이수자로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 주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야간학과가 주간학과로 개편된 경우 재적생 중 2년제는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주간학과의 정원으로 본다.(웹컨텐츠과)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동남보건대학 재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남보건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본다.

②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전산세무회계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세무회계학과 소속으로 한다.

제 4 조(학제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점포기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생중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2014학년도 1학기중 총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허용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 명칭 및 학제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14학년도 이전 간호과 입학자는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6학년도 말까지 간호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이후 2014학년도 이전 간호과 입학자가 복학할 경우, 복학대상 학년이 간호학과에 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간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본인이 기존의 과를 희망할 경우 간호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일 이전 2년제 학생의 수업연한, 수료, 졸업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수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재수강 기준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에 따른 학사경고 기준, 졸업 및 후기졸업 요건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학칙 제38조 ②항에 따른 재수강 신청기준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식품생명과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식품제약과 소속으로 한다.

제 3 조(학과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건과와 바이오환경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바이오환경 보건과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영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세무회계학과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종전의 관광일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글로벌관광서비스과(일본어전공) 소속으로 한다.
- ② 종전의 관광중국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글로벌관광서비스과(중국어전공) 소속으로 한다.

제 3 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종전의 항공관광영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항공서비스과 소속으로 한다.
- ② 종전의 피부미용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뷰티케어과 소속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 후기졸업, 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과정, 학점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교육과정 및 학점이수에 대한 규정은 2019학년도 재학생(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 ① 학과명칭 변경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② 종전의 보육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아동보육복지과 소속으로 한다.
- ③ 종전의 식품영양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식품영양학과 소속으로 한다.

**제 3 조(졸업, 후기졸업, 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과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2019학년도 신입생(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 이수 학점에 대한 규정은 2019학년도 재학생(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조직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앞서 대학 조직개편에 의해 시행된 학생상담센터 개편은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조직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 조직개편에 의해 시행된 총무팀 통합개편은 2020년 11월 13일부로 적용한다.

②대학 조직개편에 의해 시행된 학술원 통합개편은 2021년 01월 01일부로 적용한다.

③제 71조(평의원회의 구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9.08.01>

< 전문학사 학위 종별 >

계열	전문학사명	학 과
공업계열	공업전문학사	식품제조과*, 식품가공과*, 사무자동학과*, 컴퓨터응용과*, 웹컨텐츠개발과*, 인터넷경영정보과*, 웹컨텐츠과*
가정계열	가정전문학사	영양과*, 식품영양학과, 여성교양과*
간호계열	간호전문학사	간호과*
보건계열	보건전문학사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식품생명과학과, 식품제약과, 물리치료과, 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보건과, 환경관리과*, 환경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 바이오환경보건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미용과*, 피부미용과, 작업치료과, 뷰티케어과, 보건3D프린팅융합과
		교육전문학사
사회실무계열	관광전문학사	관광일어통역과*, 관광일어과,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영어과*, 항공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통역과*, 관광중국어과, 글로벌관광서비스과(일본어전공), 글로벌관광서비스과(중국어전공), 항공서비스과
	경영전문학사	e-비즈니스과*, 경영학과 전산세무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는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학과명이며 1996학년도 이전 해당학과 졸업생인 경우 학위 신청 시 <별표 1>과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 학위기에 전문학사명을 표기할 때는 ○○전문학사(○○○전공)으로 표기한다.

<별표 2> <개정 2019.01.24.>

< 학사 학위 종별 >

학사학위명	계 열	학 과	비 고
보건학사(방사선학전공)	보건계열	방사선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임상병리학전공)		임상병리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치위생학전공)		치위생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치기공학전공)		치기공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물리치료학전공)		물리치료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응급구조학전공)		응급구조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작업치료학전공)		작업치료학과	전공심화
보건학사(안경광학전공)		안경광학과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간호계열	간호학과	전공심화, 4년제
교육학사(유아교육학전공)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학과	전공심화

<별지 1>

제 호

# 학 위 증

학과 :

성명 :

생년월일 :

학위명 :

학위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학위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남보건대학교총장

<별지 2> 삭제

<별지 3>

제 호

# 학 위 증

학 과 :

성 명 :

생년월일 :

학 위 명 :

학위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학위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남보건대학교총장

&lt;별지 4&gt;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  
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동남보건대학교총장

직인

학위등록번호 \_\_\_\_\_